

법무부, 봄철 농번기 농·어촌 현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계절근로 초청 대상 유학생(D-2) 부모까지 확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범 시행 및 ‘지자체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합니다.

※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

②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행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합니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4. 2. 26.(월)부터 2024. 12. 31.(화)까지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시범사업 개요

①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 (근무지역, 업종)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지역, 계절근로 허용 분야
※ 유학생 소속 학교와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에서 활동
- (추천자 요건) 비수도권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며, 국내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
* 법무부·교육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등을 평가받은 우수대학
- (피추천자 요건) 상기 조건을 충족한 유학생의 부모로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 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 (체류자격,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

②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 (목적) 특정 지자체(또는 국가)와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송출국 국내 사정 등으로 인해 **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해당 **해외 지자체의 인력을 도입**
- (절차) ① 동일 광역권의 지자체간 업무협약(MOU) 체결사항 공유 및 활용 가능 여부 협의 → ② 해외 지자체(또는 국가)에 인력 송출 가능 여부 등 협의 → ③ 법무부 승인 → ④ 국내외 지자체간 인력 송출 최종 합의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생 부모의 계절근로 참여율 및 이탈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운영 과정상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③ 계절근로 참여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4. 2. 22.(목)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상기 종합대책을 상세히 안내하며, 일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유치 중인 전국 131개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농번기에도 차질없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단기간 또는 특정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농·어업 분야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 개요 및 관련 절차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2023년 기준, 비수도권) 명단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055)
		담당자	사무관	박정석 (02-2110-4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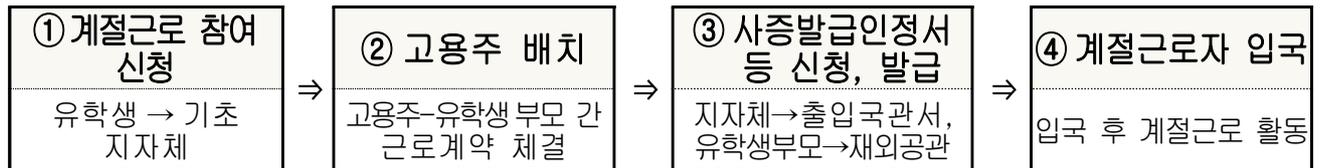
붙임 1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 초청 시범사업 개요 및 관련 절차

□ 시범사업 개요

- 대상기간: 2024. 2. 26. ~ 2024. 12. 31.
- 대상지역: 비수도권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지역
- 신청자격: 아래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유학생과 그의 부 또는 모
 - (유학생) ① 비수도권 소재 인증대학(2023년 기준)에서 1년 이상 재학한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② 잔여 유학 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이며, ③ 국내 체류 중 국내법(「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사실이 없는 자
 - (부모) 만 55세 이하이며,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자
- 근무지역: 유학생 소속 대학과 동일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 체류자격,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3개월(체류기간 연장 시))

□ 신청 및 입국 절차



- 참여신청: 유학생이 소속 대학 소재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신청
 - ※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로도 신청 가능, 소속대학 소재지가 광역시일 경우 동일 권역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신청 가능
- 입국과정: 대상자로 선발 시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사증발급인정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청
 - 필요서류: ①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사진, ②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증, ③ 재학증명서, ④ 출생증명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표준근로계약서
 - (사증) 유학생 부모가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으로 신청
 - 필요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일 기재), ② 여권, ③ 사진, ④ 수수료, ⑤ 건강진단서, ⑥ 결핵진단서(35개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 ⑦ 신청자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붙임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2023년 기준, 비수도권) 명단

□ 비수도권 소재 학위과정 인증대학 현황

지역	인증대학(77개교)	
강원 (4개교)	일반대학(4)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한림대학교
세종, 대전, 충청 (28개교)	일반대학(25)	건국대학교(글로벌), 건양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전문대학(1)	한국영상대학교
	대학원대학(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대구, 경북 (14개교)	일반대학(12)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김천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전문대학(2)	구미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부산, 울산, 경남 (20개교)	일반대학(17)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전문대학(2)	거제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대학원대학(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광주, 전북, 전남 (10개교)	일반대학(9)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문대학(1)	전주비전대학교
제주 (1개교)	일반대학(1)	제주대학교